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 및 출국, 체류 및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제8장(서비스 무역)에 정의된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각 사업목적과 분명하게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1-가에 따라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일반 의무

1. 한쪽 당사국은 제11.2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고 특히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¹

¹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1.4조 비자원활화

1. 양 당사국은 비자의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절차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11-나에 규정된다.

제11.5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들은 부속서 11-가에 기술된다.
2. 한쪽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약속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모든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자연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한한다.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투명성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한 통합 문서 형태의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 공표하고 자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 다.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출입국 조치의 수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7조 자연인의이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련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나. 양 당사국 간 자연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다.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사안의 고려, 그리고

라.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검토

제11.8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20장(분쟁해결)이 그 사안에 적용된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9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및 제22장(최종 규정)과 제18.1조(공표)부터 제18.3조(행정절차)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1-가 구체적 약속

제1절 중국의 구체적 약속

1. 중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상용 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

2. 한국의 상용 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3. **한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 판매 협상의 목적으로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자로서 그러한 대리인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한국의 투자자 또는 한국의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투자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을 위하여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다.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중국 영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한국의 서비스 판매자**란 중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중국 내 위치한 소득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그 공급자의 대리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러한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판매자가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한국 기업의 고위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 관리자, 임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중국 영역에 있는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되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한국 기업의 고위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 관리자, 임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국 영역의 외국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앞에서 언급된 입국 및 일시 체류는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7. **기업 내 전근자**란 중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나 하부 조직을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다른 인사 조치(승진 또는 휴직 승인과 같은 것을 말한다)를 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나.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투자의 운영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기술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한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8. 부록 11-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업이든지 상관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자신의 고용주와 중국 내에 있는 서비스 소비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중국 내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한국의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는 자

다. 그 고용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그리고

라. 공급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적절한 교육적 및 전문적인 자격을 보유한 자

10.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구체적 약속

1. 한국은 이 장 및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2. 한국은 진행 중인 노동 분쟁²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상용 방문자

3. 중국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상용 방문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4. **중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6. **기업 내 전근자**란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한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

² 노동 분쟁이란 고용 조건에 관련된 조합과 고용인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

를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중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7. 부록 11-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중국의 자연인은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것
-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할 것
- 다.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한다.
- 라.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을 것, 그리고
- 마.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이 요구될 것

9.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테스트가 요구되거나,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11-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한국의 경우,

1. 건설 및 발전 장비를 제외한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중국에 위치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장비 또는 그 기계류를 구입하는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것
2.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 공학, 나노 기술,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3. 회원 계약을 통하여 한국 회계 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서비스,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
4.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5. 경영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6. 다음의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 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 나.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 다. 데이터 관리 서비스
 - 라.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 마.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중국의 경우,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의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다.

- (1) 건축설계 서비스
- (2) 엔지니어링 서비스
- (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4) 도시계획 서비스(일반 도시계획은 제외한다)

(5)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6)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 교육서비스 :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적절한 전문 직함 또는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최소 2년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보유한다. 계약에 관련된 중국 당사자는 법인이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그리고

(8) 관광 서비스

부속서 11-나 비자 원활화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 내 전근자³와 투자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국에서 고용된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한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중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등록제도에 따른 최초 체류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한다.

한국은 자국의 외국인등록제도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중국에서 고용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중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한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최초 체류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한다.

중국은 자국의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한다.

2. 1998년 11월 12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절차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기본 틀에 따라,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가능한 개정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상용방문자에 대한 복수입국비자 발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약속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은 자격 있는 신청인에게 1년 동안 유효하고 매 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한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한국은 자국의 관행은 이전의 경우에 불법적인 기록 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귀국한 그 인력의 두 번째 신청부터 상기의 복수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자격 있는 신청인에게 1년 동안 유효하고 매 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한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중국은 자국의 관행은 이전의 경우에 불법

³ 기업 내 전근자란:

- 1) 중국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의 제2절제7항에 정의된 기업 내 전근자를 말한다. 그리고
- 2) 한국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의 제1절제6항에 정의된 기업 내 전근자를 말한다.

적인 기록 없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귀국한 그 인력의 두 번째 신청부터 상기의 복수입
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부속서 11-다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혜 약정

각 당사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특혜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서로의 각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국내 노동시장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투자 및 인력 이동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의 범위는 상용 방문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기업 내 전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각 정부부처는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약정에 관여하고 작업한다.